

2013년 3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김 홍(509-7242), 안광희 연구관(509-7245)
생활제품안전과장 정 의식(509-7246), 송국현 연구관(509-724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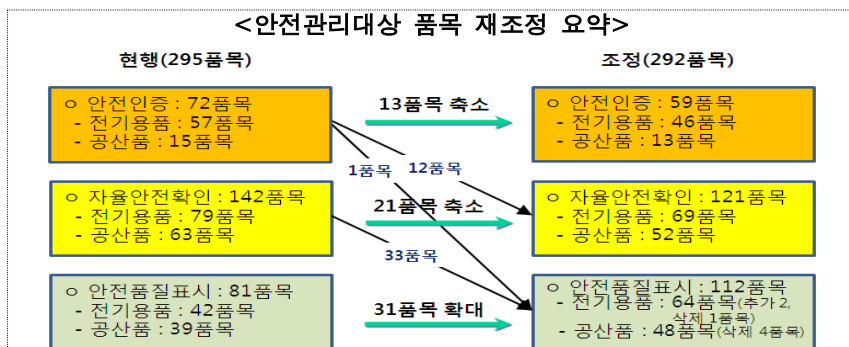
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인 자율과 책임 확대

-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및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.

□ 지식경제부(‘산업통상자원부’로 변경 예정)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
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
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(안전인증 등)를 단계적으로 완화
하는 등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및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
시행규칙 개정(안)을 입법예고 하였음(3.21 관보게재)

-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을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,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,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음.

* 안전관리의 구분 : 안전인증(인증기관의 제품시험+공장심사), ②자율안전확인(인증기관의 제품시험), ③안전표지표시(공급자접합성확인)(기업 스스로 제품시험)



- 또한,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**가정용공구 등 공산품 분야 4품목**과 타 법(계량에 관한 법률)에서 규제하는 **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**을 **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**하였으며,
- 최근, 화재·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‘세탁용제 회수건조기’와 취침시 사용하는 ‘취침등’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**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**하였음.

* 이러한 품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(www.safetykorea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□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이외에도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·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하여,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.

- 현재까지는 시험·검사의 수요는 크지 않으나 특수장비가 소요되는 등
검사 실시 비용이 커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
기술표준원은 시험·검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이 도입될
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

☐ 기술표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,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,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.

[참고] 1. 안전관리대상 재조정 품목 현황 1부.
2. 제품안전 인증제도 요약 1부.

[참고 1]

안전관리대상 재조정 품목 현황

□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으로 전환되는 품목(12품목)

전기용품	①가정용 전동채봉기 ②사우나기기 ③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④기포발생기 ⑤공기청정기 ⑥전기분무기 ⑦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 ⑧코팅기 ⑨주방용 전동기기 ⑩전기찜질기 및 발보 온기 ⑪전격살충기	11 품목
공산품	①휴대용 예초기의 날	1 품목

□ 안전인증에서 안전품질표시로 전환되는 품목(1품목)

공산품	①가(假)속눈썹	1 품목
-----	----------	------

□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로 전환되는 품목(33품목)

전기용품	①감자탈피기 ②전기정미기 ③전기 빵 자르개 ④애완동물 목욕기 ⑤전기 주류숙성기 ⑥전기시계 ⑦적외선·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⑧전기분수기 ⑨투영기 ⑩착유기 ⑪보풀제거기 ⑫새책 및 콩나물 재배기 ⑬전기작동 도어록 ⑭영상모니터 ⑮비디오케임기구 ⑯TV 영상프로젝터 ⑰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⑱재단기 ⑲실물화상기 ⑳입체영상기 ㉑ 형광램프용 스타터	21 품목
공산품	①자동차용 브레이크액 ②자동차용안전유리 ③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④자동차용타이어 ⑤자동차용 휴대용책 ⑥디지털 도어록 ⑦벽지 및 종이장판지 ⑧쇼팽카트 ⑨어린이용 장신구 ⑩휴대용 사다리 ⑪인라인 롤러스케이트 ⑫키보드	12 품목

□ 안전관리대상에서 삭제되는 품목(5품목)

전기용품	①전자저울	1 품목
공산품	①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 ②가정용 공구 ③보안경 ④보온·보냉용기	4 품목

□ 안전품질표시(공급자적합성확인)로 신규 추가되는 품목(2품목)

전기용품	①취침등 ②세탁용제 회수건조기류	2 품목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[참고 2]

제품안전 인증제도 요약

□ 제도 개요

-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하여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*, 자율안전확인** 및 안전품질표시*** 단계로 분류하여 차등화 관리

* 안전인증 : 국내·외 제조업자가 출고전(수입제품은 통관 전)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(제품검사+공장심사)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

** 자율안전확인 : 제조(수입)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·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

*** 안전품질표시(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) :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·유통시키는 제도

□ 제품안전 단계별 관리제도 소개

제도 및 관리수준	안전인증 높음 ← 규제 강도 → 낮음		자율안전확인	안전품질표시	
구분	소비생활 제품 (전기용품안전관리법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심)				표시
안전인증	안전인증신청 (제조업자) → 공장심사+제품시험 (인증기관) → 인증서 발급 (인증기관) → 정기검사 (인증기관) * 안전인증 후에는 정기검사(공장심사+제품시험) 실시				 금색 또는 검정색
자율안전확인	제품시험 (인증기관) → 자율안전확인 신고(증명서 발급) (인증기관) → 판 매 * 제품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후, 판매 (공장심사정기검사 면제)				 남색 또는 검정색
안전품질표시	자체 제품의 안전성확인 → 판 매 *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후 유통시키는 방식				

□ 관리대상 제품군 및 소관법령

구분	대상품목	품목군	관련 법령
공산품	완구 등 어린이용품, 노인용품, 스포츠용품 등	117품목	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
전기용품	전선, 케이블, 복사기, 청소기 등	178품목	전기용품안전관리법
합계		295품목	